직종 분류표

구 분	직 업	등급	구 분	직 업	등급	구 분	직 업	등급
행정,국방 사무관련직	UDT,해병,공수,공정 등 특수병과 군인 (영관급 이상 제외) 군·경 비행기 승무원(헬기,경비행기 제외)	2		시멘트 및 광물제품 제조관련 작업 종사자	2	운수 및 하역	개인택시운전자, 승합차량(26인승 이상) 운전자, 자가용 및 화물차 운전자, 대리운전원, 운전학원 실기강사, 철로 보수원, 철도신호원, 도선사, 크레인 운전원, 공항내 하역업 및 중기게 운반자, 지게차 운전원	
	경찰특공대원, 소방관, 119구조대원, 군 함정 승무원	3	비금속 제품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관련 작업자	3			3
	우퍈물 집배원(오토바이 제외), 소방관(행정직)		제조업	벽돌 및 타일로 제조 관련 종사자 비금속제품 생산관련 종사자	4	운반업	자가용 및 영업용 승합차(11~25인승) 운전자, 전동차 기관사, 비행기 조종사, 항공기 객실승무원	4
	경찰관(교통, 의경, 전경, 해경포함) 군인 및 군무원(특수병과 군인 제외)	4		광석 및 금속용광로 작업종사자, 주물제품 제조 종사자	2		철근공, 건물 해체원, 건설관련 기능종사원,	1
	연근해 어업종사자, 원양어업 종사자, 해남·해녀	1	금속산업	금형 및 단조관련 작업 종사자, 금속가공관련 작업종사자	3	건설업	건설관련 단순업무 종사자	'
수산업	번목원 어패로 미 웨조로 야시의 이어과려 청자과리자	,		철강 및 합금철제품제조 종사자. 비철금속 제련 또는 정련 작업 종사자, 금속제품 제조 및 금속가공업 종사자	4		도로, 교량,고가로,댐,터널,지하철, 철로 건설, 준설 작업자 조적공, 방수공, 내화공, 견출공, 건물 도장공, 외장 및 내장 목공, 비계공, 간판제작 및 설치원(내/외부)	2
	어패류 및 해조류 양식원, 어업관련 현장관리자	2	-1	선박 건조, 정비, 해체관련 종사자, 타워크레인 설치 및 정비관련 종사자	1			
	동물 사육사 및 조련사, 낙농관련 종사자, 과수작물 재배원, 염전생산 종사자, 갑각류 및 연체동물 포획업 종사자	3		일반크레인 설치 및 정비관련 종사자,	2		단열공, 가스배관공, 플랜트배관공, 인테리어작업자, 샷시 조립 및 설치 작업자, 함석동	3
			기계조립 설 비	산업용 기계장비, 전기·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관련 종사자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및 정비관련 종사자			조경기술자, 카펫공, 도배공	4
광 업	광원, 점화 발파 및 화약 관리원, 석공예 종사자 채석장 작업자, 자갈·모래 채취등 준설관련 작업자	1	장비업	자동차, 오토바이 정비 및 조립관련 종사자	3		선박조리사	1
	제빵 및 제과업종사자, 기타 식품가공관련 종사자	4		철도 차량 조립 및 정비관련 종사자 PC,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관련 종사자	4	판매, 숙박, 요식,유흥업	주유 및 가스 판매종사자 화공약품, 석유, 가스 등 위험품 판매원 및 자영업자 성인용 오락장 종사자, 안마사, 스포츠마사지사	3
음 식 료 제 조 업	제분 및 도정관련 기계조작 종사자	3		카메라, 휴대폰, 광학기구 수리관련 종사자			매장정리업 종사자, 판촉원, 검표원 인터넷 판매업 종사자, 방문판매원, 호텔서비스업종사자, 조리사, 패스트푸드원, 음식/음료/주류서비스업 종사자	
	정육 및 도축 관련 작업 종사자	2		송·배전 설비관련 종사자, 통신선 가설 및 유지작업 종사자	1			4
섬유,의류	섬유 제조 관련 종사자, 가죽 및 모피 가공종사자	3		통신케이블 설치 및 수리관련 종사자	2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쓰레기 수거원	
가죽봉제품 제조업	표백 및 염색관련 종사자, 신발 , 가죽제품 제조 및 수선업 종사자	4	전기,통신 가스 및	건물 내 전기설치 및 정비관련 종사자 방송 및 인터넷 케이블 설치 및 수리 관련 종사자 에어컨 설치 및 정비관련 종사자	3		스턴트맨, 경마/경륜선수, 자동차/오토바이경주선수, 전문등반인(암벽,빙벽 포함)	1
	목재가공관련 기계조작업 종사자	2	수도산업	발전소,변전소,자가발전소 근무자 및 발전기 취급자 가스제조·공급 취급자 및 설비/설치/수리관련 종사자 상하수도 설치·수리·청소 작업자, 보일러 설치 및 정비업	4	문화,사회 오락,취미 서비스업	맨홀, 각종 탱크,지하 도관 청소작업자 정화조 청소 및 분뇨 수거자, 각종 레저관련 종사자 곡예사, 차력사	2
목재가공 제 지 업 인쇄출판업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관련 작업자 목제품 제조관련 종사자 제책 및 재단용 기계조작 작업자	3		종사자 프레스 및 절단기 조작업 종사자,			경호원, 현금수송원	3
			금속가공 및 기계부품 제작업	건설 및 선박 관련 용접업 종사자	1		아파트경비원, 건물 내부 청소원, 가사도우미 세탁업 종사자, 부동산중개인, 유통 및 매장 감시원 배우, 개그맨 및 코미디언, 연예인 매니저, 가수 경기감독 및 코치(격투기),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강사 주차관리원, 주차안내원, 육아도우미, 환경감시원	
	목재가구칠 종사자, 종이제품 생산기 작업종사자	4		제조관련 용접업 종사자	2			4
화학제품 제 조 업	화학제품 생산작업관련 종사자			제관, 판금, 선반, 밀링, 드릴, 연삭, 연마작업 종사자 머시닝센터 조작업 종사자	3			
	탄약, 폭약, 불꽃제품 생산작업관련 종사자 3	3		오토바이운전자, 선장, 항해사 등 상업용 선반 선원, 경비행기, 헬기, 테스트 조종사		기 타	이삿짐 운반원(남자), 음식, 음료, 신문 등 배달업 종사자 남자 60세미만(직업종사자 제외)	1
	도료제품 개발 및 연구 종사자 석유 및 천연가스 제조관련 종사자 타이어, 플라스틱, 고무관련 제품 생산관련 종사자 화장품, 세제, 비누 및 향료 제품 제조 관련 종사자	4	하역 ト	하역 적재 및 운반관련 종사자			60세 이상 남자 및 여자(직업종사자 제외)	3
				영업용 택시운전사, 렉카차운전자 폭발물,인화물 수송차량 운전자 및 정기적 탑승자 긴급자동차운전자(앰블런스)	2	거절직종	전쟁지역 거주자/해외등반예정자 열대,한대 등 미개척지 탐험대	거절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

(보험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며, 회사는 청약일 또는 진단일 (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여부를 통지하고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 (회사의 보장개시)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되며,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신청 또는 신용카드 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또한, 승낙 전에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①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②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③ 청약서에 명시된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 보험가입 한도금액의 초과 청약액
- ·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 ② 만 15세 미만자,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③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계약의 해지) 2회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되지 않은 경우
- 그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상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순위로 보험수익자를 정합니다.
 - ▶ 민법상 법정상속인 순위 :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 배우자는 위의 1,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됨
-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험등급별 가입한도 안내

- ·위 분류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직종에 대해서는 유사한 직종의 등급을 적용하며, 위 분류표에 <u>2가지 이상 해당될</u> 경우 위험도가 높은 쪽의 등급을 적용합니다.
- · 개인 및 단체상품의 기계약을 합산하여 <u>피보험자 1인당</u> 보험가입 금액한도를 초과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계없이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감액합니다.
- · 위험등급별 가입한도

	위험1급	위험2급	위험3급	위험4급
사망보험금	3천만원	1억원	2억원	4억원
장해보험금	3천만원	1억원	2억원	4억원

※ 상기 가입한도 및 위험등급은 보험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자동이체 안내

- · 청약이 승낙되면 <u>제1회 보험료 이체일을 계약일(책임개시일)</u>로 하되, 보험료가 정상 납입된 경우에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체불능인 경우 계약은 자동 무효처리 됩니다
- · 제1회보험료 영수증은 고객통장의 보험료 이체내역으로 대체합니다.
- · 1회보험료 이체시 가능시간은 은행정상업무 시간대로 한정합니다.

청약철회 신청서

본인은 귀사에 청약한 계약을 철회하고자 하오니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 년 월 일 서명(인) · 주민등록번호 : · 계약자 :

서명(인) 관계: / 법정대리인(친권자): · 법정대리인(친권자) :

서명(인) 관계:

·주 소:

· 입금처(거래은행) : · 계좌번호 : · 예금주 :

※ 청약철회 신청 안내

- 1.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우편 송부시는 우체국 소인 기준)에 청약철회청구서를 등기 우편을 통해 해당 보험사로 발송하거나 본인이 직접 가입점포로 내방하여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으나, 다음의 한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①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자가 체결한 계약
 - ②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2.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3. 청약철회 신청서를 접수 또는 발송한 날 이후(발송일 포함)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아니하며, 입금처의 거래은행 예금주는 계약자와 동일해야 합니다.